

# 내부제보실천운동 정관

제 정 : 2017년 3월 15일

1차개정 : 2018년 1월 31일

2차개정 : 2019년 2월 27일

3차개정 : 2024년 3월 21일

## 제1장 총 칙

### 제1조 [명칭]

이 모임은 '내부제보실천운동'이라 한다.

### 제2조 [목적]

본 단체는 공익을 위한 공직자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보를 활성화하고 내부제보자를 보호하는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부정부패 없는 맑고 투명한 사회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구성]

본 단체는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하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한다.

### 제4조 [사업]

① 본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전개한다.

1. 내부제보의 상담, 안내와 지원 등을 통한 내부제보자 권익 보호 사업
2. 내부제보사건의 신고 및 조사 담당기관 및 수사기관의 공정한 처리 촉구
3. 공직기관, 기업체, 학교 대상 내부제보 활성화 교육 및 캠페인
4. 내부제보자 보호를 포함한 반부패 법률 및 조례의 제·개정 사업
5. 내부제보자 보호를 위한 공익재단의 설립 준비와 지원
6. 본 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내외 단체와 연대활동
7. 그 밖의 본 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본 단체는 제2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5조 [소재]

본 단체의 사무소는 서울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방 및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2장 회 원

#### 제6조 [회원]

1. 본 단체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회원이 된다.
2. 회원은 일반회원, 후원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3. 각 회원의 가입절차와 회비는 내규로 정한다.

#### 제7조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본 단체의 운영과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
2. 본 단체 내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 제8조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본 단체의 정관 및 내규를 지킬 의무
2. 본 단체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 제9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제10조 [자격 상실]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본 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내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제11조 [회원모임협의회]

- ① 본 단체 회원은 사무처와 협의하여 회원모임을 결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 ② 회원모임의 활성화와 모임 상호간의 협력을 위하여 회원모임으로 구성된 회원모임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③ 회원모임협의회는 자치적으로 회장과 부회장을 둘 수 있고, 본 단체의 목적과 사업의 취지 안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 ④ 회원모임과 회원모임협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제3장 기 구

### 제1절 총회

#### 제12조 [지위]

총회는 본 단체의 최고의결기구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13조 [소집과 방식]

- 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안에 연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재적 회원 1/10이상 이나 감사의 요구,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 ② 총회의 소집은 상임대표 전원의 명의로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총회의 의장은 상임대표 중 연장자가 맡으며, 상임대표 불출석시에는 공동대표 중 연장자가 맡는다.
- ④ 필요한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총회를 진행할 수 있다.
- ⑤ 인터넷을 이용한 총회에서의 토의, 의결 등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내규로 정한다.

#### 제14조 [정족수]

- ① 총회의 정족수는 재적회원의 1/3 이상으로 한다.
- ②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총회의 구성원이 불출석할 경우, 출결 및 안건의 의결권을 출석 회원에 위임할 수 있다.

#### 제15조 [권한과 의결사항]

①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

1.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공동대표 및 감사의 선출 및 해임 등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본 단체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운영위원회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8. 감사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9. 기타 본 정관에서 총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② 총회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그 권한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제2절 운영위원회

### 제16조 [운영위원회의 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때까지 본 단체의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다.

### 제17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 ①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운영위원과 위촉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당연직 운영위원은 상임대표를 포함한 공동대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무처 책임자, 각 회원모임의 대표로 한다. 단, 회원모임의 대표에 대한 기준과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 ③ 위촉직 운영위원은 법률지원단장, 상담센터 소장 등 본 단체에서의 역할을 감안하여 15명 내외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운영위원회는 상임대표 전원 명의로 소집하며,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상임대표들간의 협의로 정하여 회의를 주관한다.

### 제18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운영위원회는 연 2회 소집하는 정기 운영위원회와 감사 및 운영위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는 임시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 제19조 [운영위원회의 의결]

-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구성원 재적 1/3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상임대표단은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 의결에 부의할 수 있다. 서면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결과를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추인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 운영위원 1/3이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상임대표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0조 [운영위원회의 권한]

- ① 운영위원회는 상임대표 및 각 위원회의 장, 법률지원단장의 선출과 상담센터 소장을 임면하고, 각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의 장을 임명하며, 각 회원모임에서 선출된 회원모임 대표 및 회원모임협의회 대표를 인준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본 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각 활동기구를 조직·관리하며, 예산을 편성·집행하며 이를 위해 사무처를 설치·운영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각 위원회와 각 부설기관의 활동을 지원한다.
- ④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결의할 수 있다.
- ⑤ 본 단체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임대표, 공동대표, 상임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무처 책임자가 부의하는 사항
- ⑥ 본 정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본 단체의 운영 등에 관한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제3절 공동대표, 상임대표, 고문, 자문위원, 감사 등

#### 제22조 [공동대표 및 상임대표]

- ① 공동대표는 본 단체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공동대표는 10인 내외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를 통해 공동대표 중 3인 내외를 상임대표로 선정할 수 있다.
- ④ 상임대표는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사무처를 지휘 감독한다.

#### 제23조 [고문 등]

- ① 운영위원회는 내부제보활동 및 사회투명성 발전에 공헌이 있는 자, 공동대표 등으로 활동한 전직 임원 등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10명 이내의 상임고문을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및 내부제보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상임대표는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24조 [법률지원단 등]

- ① 원활한 상담 및 법적 지원과 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 등을 위해 전문가들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한다.
- ② 법률지원단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법률지원단의 단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상담 및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제반조치의 안내를 위하여 상담센터를 둘 수 있고, 상담센터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명할 수 있다.

#### 제25조 [감사]

- ① 본 단체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2명의 감사를 둔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본 단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비위의 사실이 있거나, 감사 결과 긴급한 의결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절 위원회, 활동 기구, 사무처, 후원회

#### 제26조 [위원회]

- ① 본 단체는 기획, 재정, 홍보, 조직, 대외협력 등의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본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상임 위원회를 둘 수 있고,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해당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회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각자 희망에 따라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각 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한다.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27조 [활동기구]

- ① 본 단체의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활동기구 및 산하기관을 둘 수 있다.
- ② 각 활동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③ 각 활동기구는 본 단체의 목적과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전체 사업취지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 제28조 [사무처]

- ① 본 단체의 실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총장은 본 단체의 실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③ 사무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사업계획에 따른 사무와 일상적인 업무를 벗어난 사무에 관하여는 상임대표의 재가를 받아 시행하며, 사무처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다.
- ④ 사무처에는 사무총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내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무국장, 사무처장 등의 직책을 둘 수 있으며, 사무총장이 껄위 시 사무국장, 사무처장의 순으로 그 업무를 대행한다.
- ⑤ 사무국장과 사무처장은 집행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사무처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제29조 [후원회]

- ① 본 단체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건전한 육성 발전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후원회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상임대표가 위촉한다.

### 제5절 지역조직, 부설기관

#### 제30조 [지역조직]

본 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역조직을 둘 수 있다.

#### 제31조 [부설기관]

본 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 제4장 재 정

### 제32조 [회계 연도]

본 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3조 [예산과 결산]

- ① 사무총장은 다음 해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당해 연도 총회에서 추인받아야 한다.
- ② 사무총장은 회계연도 경과 2개월 내에 예산회계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 결산 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총회에서 추인받아야 한다.

### 제34조 [수입]

본 단체의 수입은 회원 회비, 후원금, 특별 모금, 기타 수익으로 한다.

## 제5장 정관개정

### 제35조 [정관 개정]

- ① 본 단체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과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한다.
- ② 개정안은 총회 개최 7일전까지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 제6장 해산

### 제36조 [해산 사유]

본 단체는 아래의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 ① 설립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 ②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 ③ 기타 설립 취지에 따른 단체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이 있을 때

### 제37조 [해산 절차]

- ① 전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을 결정한다.
- ② 해산 결정과 함께 청산에 필요한 업무 처리를 위해 총회에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38조 [잔여 재산의 귀속]

- ① 본 단체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 제7장 보 칙

#### 제39조 [정당활동 등의 제한]

- ① 대표단, 사무총장, 각 위원회의 장이 공직에 취임할 경우 또는 공직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임하여야 하고, 공직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본부의 주요 직책을 맡거나 상임 선거운동원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의 권한이 정지되며 선거활동 종료 이후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복귀할 수 있다.

#### 제40조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 ①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 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월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월별 수입내역과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한다.
- ③ 기부금은 사익이 아닌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다수로 한다.

#### 제41조 [준용 규정]

- ①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 ② 내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 부 칙

#### 제1조(시행)

본 정관은 2017년 1월 16일 창립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본 정관은 2018년 1월 31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본 정관은 2019년 2월 27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본 정관은 2024년 3월 21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까지 단체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 및 창립총회의 의결, 준비위원회의 의결은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내부제보실천운동 회원명부

|     |     |         |          |     |
|-----|-----|---------|----------|-----|
| 고혜영 | 김이슬 | 송병춘     | 이종인      | 조재현 |
| 곽진웅 | 김주언 | 송경희     | 이종호      | 진웅용 |
| 곽태호 | 김준  | 신광식     | 이준석      | 차성복 |
| 권승구 | 김태빈 | 신현철     | 이지문      | 최광일 |
| 권오영 | 김현진 | 안종훈     | 이지윤      | 최현주 |
| 권희청 | 김형남 | 안드레     | 이춘미(안젤라) | 최홍범 |
| 김광직 | 김희정 | 안디도     | 이탁연      | 하윤옥 |
| 김기홍 | 류수연 | 안천식     | 임미리      | 하인숙 |
| 김도리 | 문성훈 | 양시경     | 임정휘      | 한경호 |
| 김명환 | 박광서 | 염종권     | 임은지      | 한만수 |
| 김미덕 | 박선영 | 오현석     | 임종린      | 한은영 |
| 김민규 | 박오복 | 유인정     | 장경선      | 허태곤 |
| 김상균 | 박종린 | 유혜림(리유) | 전경원      | 허정아 |
| 김서중 | 박현영 | 이경애     | 전순남      | 황성연 |
| 김성환 | 박현배 | 이도희     | 정미현      |     |
| 김송일 | 배병태 | 이대인     | 정미현      |     |
| 김연숙 | 배현봉 | 이민경     | 정유진      |     |
| 김영미 | 배현진 | 이상훈     | 정현경      |     |
| 김영수 | 백수인 | 이석만     | 조대희      |     |
| 김영숙 | 백찬홍 | 이승균     | 조동규      |     |
| 김영인 | 석지관 | 이영이     | 조성강      |     |
| 김은영 | 서희주 | 이일호     | 조승현      |     |